

#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

( 제정) 2021.11.10 규칙 제103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.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무부서의 지정)** ①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하며,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, 배분,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 직속기관·사업소·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「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.
2.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 비중이 큰 부서 또는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.

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부서)** ① 정보의 사전적 공개업무는 「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.

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장이 공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,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)**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 한다.

**제5조(심의요청)**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처리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심의위원의 책무)**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.

## 부칙<규칙 제1031호, 2021.11.1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